

(시민봉사과)

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조기정착

실거래가 확보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공과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 향상

□ 사업개요

- 시행시기 : 2006. 1. 1
- 신고대상 : 토지·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
- 신고의무자 :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
- 신고기간 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위반시 :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(거래금액의 6%)

□ 그간의 추진사항

-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창구 및 콜센터 운영(2006. 1월)
- 홍보스티커 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(2006. 1월)
-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·단속반 편성(2006. 1월)
-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자 조사(2006. 수시)
-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해소(2006. 5월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실거래가 신고방법 홍보
-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·단속반 운영
- 부적정 신고혐의자 색출 조사·단속
-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

지적측량기준점 관리방법 개선

지적측량 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(PBLIS)에 의한 데이터베이스화로 관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대상 = 1,016점 (전년도 망실점 : 84점)
 - 지적삼각점 = 7점, 지적삼각보조점 = 4점, 도근점 = 1,005점
-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체계 일원화
- 지적측량기준점 위치(좌표) 도형 및 속성자료 전산구축

□ 그간의 추진사항

- 관련기관 사업부서 지적측량기준점 보호 협조 시행 : 2006. 1월
-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부서에 도근점 망실 위치현황 통보
- 지적도근점 망실 유·무 현지 전수조사 : 2006. 3월~ 6월
 - 조사 점수 : 710점(완결 690점 , 망실 20점, 망실율:2.9%)
 - ▶ 망실 원인 : 각종 도로굴착공사(도시가스,상·하수도 공사 등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관련부서 협조체제 구축 2차 통보 : 2006. 7월
- 도근점 망실 행위자 조사 및 재설치 비용 부과 통보 : 2006. 8월
- 지적측량기준점 하반기 조사대상 현지조사 및 사후 조치
 - 2차 지적기준점 망실 유·무 확인 조사 : 2006. 10월(306점, 30%)
 - 2차 도근점 망실 행위자 조사 및 재설치 비용 부과 통보 : 2006. 11월
-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PBLIS 데이터 구축 : 2006. 12월

토지거래허가된 토지 위법행위 최소화

- ◇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취득시 허가목적대로 이용을 촉구하고
- ◇ 위법 부당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정착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당초 토지거래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타목적 용도로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 최소화
- 부동산투기의 근절 및 지속적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
-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

□ 그 간의 추진실적

- 2분기 신규허가건 토지거래허가 유의사항 안내문 교부 : 48건
- 전년도 과태료 부과 토지 이용촉구 이행 안내문 발송 : 2회 104건
- 전년도 과태료 부과대상 개별 상담 및 전화 이용촉구 : 50건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신규허가건 토지거래허가 유의사항 안내문 교부
- 전년도 과태료 부과토지 이용목적 이행여부 확인 점검 실시
 - 기 간 : 2006. 7. 1 ~ 7. 20
 - 대 상 : 52건
 - 점검내용 :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여부 및 변경승인 여부
- 미 이행토지 최종 이행촉구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